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일, 정동만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2.)

제422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2. 19.) 상정

제427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7. 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7.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
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동만의원)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체로, 2010년에 시범 시행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이 시작된 이후,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음.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은 2011년 196억 원에서 2023년 3,09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기업당 매출액 또한 3,6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전국에서 1만 2,26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도 지속해서 확대해 현재 3,189명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하며 상당한 수준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음.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